

의안번호	2208166
의 퇴 인	김도읍 의원
회 답 일	2025.2.27.
추계번호	25C08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신설)	재량규정
2	안 제33조제1항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하여야 함(제1항) ※ 현행: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3조제1항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2. 상세 사유

가.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안 제32조제1항제5호)

- 개정안에 따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¹⁾하는 경우 CCTV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대상 시설은 2024년 5월 기준 총 1,746개소이며, CCTV는 17,514대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음([표 1] 참조)

[표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2024년 5월 기준)

(단위: 개소)

시·도	시군구	시설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
		계	도시공원 (제1호)	어린이집 (제2호)	초등·특수학 교 (제3호)	유치원 (제4호)	
서울	4	241	105	6	125	5	5,061
부산	16	203	15	50	121	17	2,372
인천	1	16	—	6	6	4	16
대전	1	150	66	35	23	26	982
경기	3	782	7	728	47	—	7,828
강원	3	47	29	4	14	—	118
전북	4	101	39	18	28	16	308
전남	2	50	—	11	37	2	105
경북	1	24	24	—	—	—	138
경남	4	132	46	20	65	1	586
합 계	39	1,746	331	878	466	71	17,514

주: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제주에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이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취합 후 제출

1)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의 수,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원의 수, 해당 학원당 CCTV 설치 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학원의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

나.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안 제33조제1항)

- 개정안에 따라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활용을 의무화하는 경우 현행 미배치 지역에서의 아동안전 보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현황 자료가 부재하고 아동안전 보호인력에 대한 대상 범위, 인건비, 확대 규모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경찰청은 2022년까지 “아동안전지킴이(자치)” 사업(2022년 예산 645억 1,600만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안전 보호인력인 “아동안전지킴이”²⁾ 배치·운영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자 운영 중으로 관련 현황 자료가 부재함
 - 또한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의무화에 따른 경찰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순찰인력의 증원 여부 및 증원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퇴직한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 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공원 등에 대한 집중순찰을 통해 성폭력·학교폭력·유괴·실종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 및 비행 청소년 선도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assembly.go.kr